KOSHA GUIDE C - 61 - 2012

터널공사(Shield-T.B.M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2. 8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제정자: 고재철
- o 제정경과
 - 2008년 9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2008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o 관련규격
 - 일본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 : 쉴드터널 작업의 안전
 - 지하공간 개발의 Shield tunnel method 건설지 : 박완석 편저
 - Shield-T.B.M 공법을 적용한 터널공사 현장
 - 터널표준시방서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(건설 작업등에 의한 위험 예방)
 - 노동부고시 제2009-44호 (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-NATM공법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8 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터널공사(Shield-T.B.M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(터널작업)의 규정에 따라 터널공사(Shield-T.B.M공법)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터널공사 중 Shield-T.B.M 공법을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Shield-T.B.M 공법"이라 함은 T.B.M(Tunnel boring machine)장비의 전면부(커 터헤드(암반굴착을 위한 원통형의 날))와 후면부에 쉴드장비를 연결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기계식 터널굴착 공법으로서 막장 후방에서 터널 벽면 형상의 원통형 세그먼트(Segment)를 조립하여 이를 지보공 겸 복공으로 이어나가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을 말한다.
 - (나) "전면부(Head part)"라 함은 커터헤드(Cutter head), 쉴드 주 본체(Shield main body, 막장부에 설치되는 굴진장비), 그립퍼(Gripper) 등으로 구성되어 터널 막장을 굴착하는 주요 기계부를 말하며, 장비의 특성에 따라 커터(Cutter)의 개수, 그립퍼(Gripper)의 유·무, 실린더(Cylinder)의 개수 등이 다르게 구성된다.
 - (다) "그립퍼(Gripper)"라 함은 쉴드 주 본체(막장부에 설치되는 굴진장비)의 원통형 면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, 굴진 시 반력을 얻기 위해 장비를 지반에 고정시키는 기계장치를 말한다.

C - 61 - 2012

- (라) "후방설비"라 함은 장비의 구동 및 조작을 위한 조작실, 변압기, 유압설비, 급수 장치, 집진설비, 버력 반출용 벨트컨베이어 등이 설치된 부분을 말한다.
- (마) "세그먼트 블록(Segment block)"이라 함은 터널 굴착 단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동바리와 복공를 겸한 아치모양의 철근 콘크리트세그먼트 단편을 말한다.
- (바) "이렉터(Erector)" 라 함은 후방설비 내에 위치하여 후방설비 내로 운반된 세그먼 트 블록을 굴착된 터널 벽면에 부착하여 세그먼트를 조립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.
- (사) "광차(Muck car)"라 함은 전방 커터헤드부에서 분쇄된 버력(암반, 토사 등)을 후 방설비인 벨트컨베이어에서 버력처리용 횡갱(또는 수직갱)까지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.
- (아) "전방보조터널"이라 함은 발진 수직구로 투입된 커터헤드 부 및 후방설비 등의 기계조립 공간이며, Shield-T.B.M 장비 구동을 위한 준비작업 공간으로서 NATM(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)공법으로 시공된다.
- (자) "후방보조터널"이라 함은 장비 발진을 위한 반력대 설치장소 및 초기 굴진 시 발생되는 버력 등을 처리하는 공간이며 통상 전방보조터널과 함께 NATM공법으로 시공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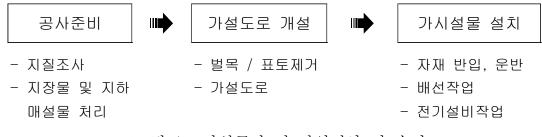
(1)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과 터널 형상을 파악한 후 가시설물 설치계획, 수직터널 및 수평 보조 터널 등 세부작업 단계별 안전작업 방법과 순서,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 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KOSHA GUIDE C - 61 - 2012

- (2) 작업계획서는 본 공법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공사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주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 기 설치위치 선정 등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4) Shield-T.B.M 장비는 전문 시공업체의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대차 이동 중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대피장소 지정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매연, 분진 발생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(5) 장비 반입 · 반출 등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립, 해체 공정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5. 공사 단계별 안전작업 사항

5.1 가설공사 안전작업

(1) 가설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는 <그림 1>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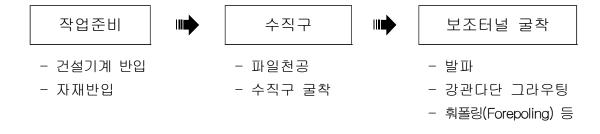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가설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

C - 61 - 2012

- (2)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(가) 시추(보링) 위치
 - (나) 토층 분포 상태
 - (다) 투수계수
 - (라) 지하수위
 - (마) 지반의 지지력 등
- (3) 공사 전 작업구간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관로, 송유관, 통신 및 전력 케이블, 도시 가스관,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,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4) 가설도로 개설 및 가시설물 설치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절·성토 공사 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
 - (나) 토공장비, 다짐장비 및 덤프트럭 등의 작업 시 신호수 배치
 - (다) 수전 설비에 대한 접근성, 주변 조건, 접지, 전선방호, 위험지역 구획 및 격리 등

5.2 굴착공사 안전작업

(1) 굴착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는 <그림 2>와 같다.



<그림 2> 굴착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

C - 61 - 2012

- (2) 작업준비 시 건설기계 투입, 자재 반입을 위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세그먼트 블록 투입과 버력 반출용 양중장비 설치 및 작업계획 작성
 - ① 1개 수직구에 2개의 인양장비 설치 여부 검토
 - ② 장비형식, 설치위치, 용량, 장비 간 간섭여부 확인 등
 - ③ 부재 중량 및 조립작업 용 장비, 기자재, 작업순서 및 방법 결정 등
 - (나) 건설기계 반입 전 작업방법, 작업내용에 따른 용량 형식 결정
 - (다) 건설기계 반입 및 작업 시 지반침하방지 조치, 동선 확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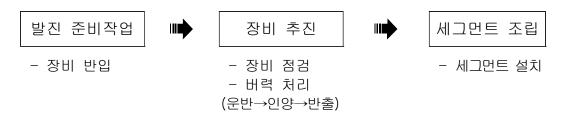
(3) 수직구 굴착

- (가) 수직구 굴착공사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① 세부공정표
 - ② 지반깊이별 굴착방법
 - ③ 단계별 벽체 시공방법
 - ④ 사용장비, 굴착토사 인양, 적재, 운반, 사토 방법 등
- (나) H-Pile 시공을 위한 항타기의 전도방지를 위해 작업하중에 적합한 지반의 평편성 과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다) 수직구 굴착단부에는 추락 및 낙하물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굴착토사 인양 중 낙하재해 예방을 위하여 인양 버킷은 정량 적재 후 20 % 이상 의 여유높이가 갖게 하거나, 덮개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작업자 대피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마) 굴착지면에 투입되는 굴삭기의 운전석은 낙하물에 대비한 헤드가드를 설치하여 야 한다.
- (바) 흙막이지보공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사) 지면에서 굴착작업장소까지는 계단구조의 승강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아) 굴착작업 진행 중 용수량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자) 발파작업 시 발파면이 습윤포화 상태의 경우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KOSHA GUIDE C-46-2012(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)에 따른다.
- (차) 전, 후방 보조터널은 통상 NATM공법에 의한 수평터널로 시공되므로 KOSHA GUIDE C-45-2012 터널공사(NATM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.

KOSHA GUIDE C - 61 - 2012

5.3 굴진공사 안전작업

(1) 굴진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는 <그림 3>과 같다.



<그림 3> 굴진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

(2) 발진 준비 작업

- (가) 보조터널에서의 장비조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① 장비거치 및 굴진용 레일 설치 계획
 - ② 부재 투입순서 및 부재별 중량표 작성
 - ③ 수직구 투입 인양장비(인양단위 최고중량 기준) 선정 및 보조기구 사용계획
 - ④ 조립순서 및 방법
 - ⑤ 조립작업용 발판 등 가시설 설치계획
 - ⑥ 시운전 전·후 안전점검사항 등
- (나) 수직구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할 경우에는 사용 전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하부의 건수(乾水)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일정높이를 이격하여 탑승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(3) 장비추진

- (가) 장비성능과 지반상태에 따른 굴진속도 기준을 설정하여 굴진하여야 하며, 지반상 대는 막장관찰과 버력상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터널 내·외부 연락을 위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다) 작업 중 정전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C - 61 - 2012

- (라) 굴진장비는 1회/일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하되 검검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 - ① 살수 및 유압설비 연결부 누수 · 누유 여부
 - ② 기계 회전부의 마모 및 소음 상태
 - ③ 설비 연결부(볼트, 용접)의 이완여부
 - ④ 운전실 계기 작동상태
 - ⑤ 벨트컨베이어 롤러 및 벨트상태
 - ⑥ 경암 천공 및 굴진 작업 중 진동 및 소음 상태
- (마) 암판정 및 설계에 의한 무지보구간 이외에는 세그먼트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의 굴진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바) 커터헤드부 회전판의 비트(Bit) 교체를 위해 막장면 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 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① 비트교체는 수명도달 전 안정지반에서 조기 교체
 - ② 진입 전 반드시 낙석 또는 붕락위험 여부 확인
 - ③ 이상발견 시 안전한 위치로 추가 굴진
 - ④ 막장과 커터헤드 이격 최소화
 - ⑤ 부득이 한 경우 막장부 보강조치 후 진입 및 내부에 감시자 비상대기
- (사) 터널내부 환기·조명·배수시설은 KOSHA GUIDE C-45-2012 터널공사(NATM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르되, 벨트컨베이어에서 버력낙하 시 분진비산방지를 위해 살수 및 집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(4) 버력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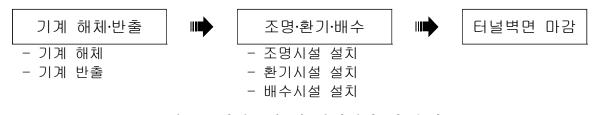
- (가) 광차의 견인차는 축전 전동식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정지에 따른 예비견인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나) 광차에는 비상정지장치, 경광등을 설치하고 근로자 탑승석에는 이탈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광차의 운전속도는 10 km/h 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(라) 광차의 운행공간과 근로자 이동통로는 반드시 분리 · 설치하여야 한다.

C - 61 - 2012

- (마) 광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1회/일 이상 점검을 통해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① 브레이크 및 비상정지 장치 작동상태
 - ② 조명 및 경광등 상태
 - ③ 차량간 연결부 및 바퀴 이상유무
- (바) 수직구에서 버력반출을 위한 크레인작업은 KOSHA GUIDE M-85-2011(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르며, 상·하연락은 유 · 무선 수신기를 이용하고 인양작업 시 하부작업자는 대피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(5) 세그먼트 블록 운반 및 조립작업
 - (가) 세그먼트 블록을 수직구로 반입하기 위한 크레인작업은 5.3항 (4)호의 (바)에 따른다.
 - (나) 광차 등 운반설비에 세그먼트 블록 적재 및 운반 시에는 이탈방지를 위해 고임목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.
 - (다) 운반설비에서 후방설비로 세그먼트 블록을 하역 시에는 전용 기계설비를 사용하 되 작업자는 세그먼트 블록의 운반경로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 - (라) 세그먼트 블럭의 조립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이렉터로 작업하되 이렉터 및 세그먼 트 블록 운반구역에는 근로자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설비와 비상정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5.4 마감공사 안전작업

(1) 마감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는 <그림 4>와 같다.



<그림 4> 마감공사 시 작업절차 및 순서

C - 61 - 2012

- (2) 기계해체 및 반출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(가) 안전작업 방법, 해체순서 및 투입인력
 - (나) 해체작업에 따른 수직구 투입 인양장비(인양단위 최고중량 기준) 선정 및 보조기 구 사용계획
 - (다) 이동식 전기기계·기구 사용에 따른 감전재해예방 계획
 - (라) 해체작업용 발판 등 가시설 설치계획 등
- (3) 마감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대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(승강설비, 안전난 간, 안전대 부착설비 등)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4) 마감공사를 위해 유기용제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가스농 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고,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·성분, 함유량, 안전·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.
- (5) 그 밖의 부대시설 및 마감공사는 KOSHA GUIDE C-43-2012(콘크리트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) 및 KOSHA GUIDE E-106-2011(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